

常務理事會々議錄

1. 場 所 國 協 事 務 局

1. 日 時 檢紀四二九一年五月一日下午二時

1. 參 座 件
1. 索 件
司 會
(李鳳順)

事務局長으로 하여금案件에 대한 경過를 報告케 한바
現在까지 韓國에는 國家의 인 図書交換 협정이 없어서
正常的의 國際交換을 못하고 있는 實情이며 現在까지
韓國에 到着되는 寄贈本 交換圖書의 通則은 配付事務는
暫定的으로 유비스코 韓委에서相當하고 있는바 今般
유비스코 韓委로부터 國協에 대하여 本件事務를 引繼하여
달라는 正式要請이 有하므로 事務의 性質上 常務理事會을
開催하게 되었는 것을 報告함

蔡官錫氏
이 問題를 高大中 經驗을 通해서 볼때 現在 韓國에는
國際出版物 交換 협정이 없기 때문에 유비스코 韩委가 曾
提及의 드로 韓國에導入되는 寄贈本 交換圖書의 配付
事務를 相當하고 있는바 그 内容을 보면勿論 유비스코의
活動으로導入되는 寄贈圖書도 있으나 到着圖書의 大部分
은 韓國의 大學을 為主한 各圖書館 및 機關에서 個別의 으로
各國에 寄贈 또는 交換資料로 보내는 대酬로서 配付처가
指定되어 오는것이므로 事實上에 있어서는 圖書館分野에
屬하는 事務이기는 하나 유비스코나 國協 같은 团體가 事
業의一部로서 맡을것이 아니라 計劃遠期相當을 予算을

첫인 國家의 인 寄贈 및 交換函書의 國外發送 및 國內導入을 負担하는 交換専務가 생려서 專門的으로 運營해야 할 重大한 事業이며 이러한 機関의 設立에 努力해야 할것이나 當面問題로서는 그린한 機関이 성질때 까지의 空間을 누가맡느냐 하는 것인데 어느 機関이 달리 充分한予算準備가 있는限 受荷者の 不足을 免기 어려울 것으로 안다.

그까닭은 各國各機關에서 보내는 關係函書本量으로는 많을 것이다. 뜻되나 個數로는 적지 않은것인데 逾期에 責任完遂를 하려면 적어도 一個月에 一次以上으로 通商配付 해야할것이며 理想的으로는 取扱機關에서 經費負担까지 했으면 좋겠으나 現實적으로는 契費를 徵收도 해야할 것이므로 먼저 國協事務局에서 이 事務를 貼當할 人的인 余裕가 있는 것인지를 詢問하신바 事務局長

李鳳嶽理事

이 問題는 내가 參加한 昨年에 日本에서開催된 國際出版物 交換에 関한 研究会와 今年에 떨기에서 開催되는 國際出版物 交換에 関한 유네스코協定 締結會議와도 密接한 關係가 있는 問題이며 將來는 보다 充分한 能力を 갖인 独立機構가 생겨야 하겠으나 期待하기 어려우며 우리 境情으로는 國立圖書館 또는 國會圖書館中에서 맡는것이 좋다고 生覺되나 이亦是 嘘場에는 困難할것이니 유네스코가 引繼할 意思가 있다면 國協가 맡는것을 原則的으로 賛成한다.

그런데 問題는 이 事務를 完全히 引繼받느냐 (國協各議主) 部分的으로 引繼받느냐 (通商、配付)에 있을것이다.

유네스코 聽委에서 完全히 引繼할 意思가 있다면 어려운 일이

기는 하니 因協의 責任下에 將來의 交換卷의 土旨를 둘는
대는 究竟에서 因協의 引繼 받을 意思가 있는것이나 部分的
인 引繼일 構遇에는 既司 유비스코 轉國取報所로 登錄
되어 있으며 또한 受苦中에 있는것이나 將次完全한 構
構가 성질때 까지 유비스코 轉委外 繼續 受苦詢 주기
바란다.

貿易會理事 유비스코 事務局長이 同席해서 이 問題를 相議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意見에 따라 事務局長 張局長이 電話로
常務理事회에 意見를 傳達한다

張 유비스코
事務局長 (電話로) 完全引繼問題은 事務局長 獨斷으로 決定할수 있으나
常任執行 委員會에 上提하여 그決策에 따라 回答
을 해주시겠다는 要旨의 通知를 해おく

蔡理事 이건은 只今의 張局長 말씀에 따라 因協側의 意思는
正式으로 通知하여 유비스코 轉委側의 回答에 依하여 轉
國에 到着되는 順便與 交換因書의 通關配付 事務가 유
비스코 轉委의 基本事務 分野에 屬하여 完全引繼가 不可
한 情況의 것이라면 因協이 引繼 받을수 없는것이고 完全
引繼를 해줄수 있는 情況의 것이라면 因協이 引繼 받아 因
協 責任下에 國際的으로나 國內的으로나 最善을
해보는것이 좋으리라는 發言이 可決됨

司會 例會를 宣言함